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 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개정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칙제정)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세칙제정)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 (적용범위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 11조, 제 17조, 제 37조의 2, 제 40조, 제 52조, 제 5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등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2012년 8월 15일 체결되고 2012년 8월 29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로 이전된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대한 2012년 11월 9일자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지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